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 24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23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목 차

I.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
II.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	5
2. 운영성과표 -----	7
3. 주석 -----	8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총회 및 이사회 귀중

2023년 3월 13일

감사의견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2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법인의 재무제표는 법인의 2022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한국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 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의 보고 책임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며, 법인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는 해당 기간 지방보조금의 운영성과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법인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법인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

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52 명신프라자 6층

회 계 법 인 더 함

대표이사 최 호 윤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법인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제 24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23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 장 김 현 훈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6층(공덕동, 서울복지타운)

(전 화) 02-2021-1721

재 무 상 태 표

제 24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3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단위 : 원)

과 목	제 24(당) 기			제 23(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 산						
I. 유동자산	1,794,838,955	1,794,838,955	-	1,453,977,319	1,453,977,319	-
(1) 당좌자산	1,281,667,707	1,281,667,707	-	988,574,150	988,574,150	-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4)	1,273,067,707	1,273,067,707	-	959,634,150	959,634,150	-
미수금	5,200,000	5,200,000	-	5,600,000	5,600,000	-
선금금	3,400,000	3,400,000	-	23,340,000	23,340,000	-
II. 재고자산	513,171,248	513,171,248	-	465,403,169	465,403,169	-
기부물품(주석12)	513,171,248	513,171,248	-	465,403,169	465,403,169	-
III. 비유동자산	527,646,086	527,646,086	-	499,899,016	499,899,016	-
(1) 유형자산(주석5)	41,749,675	41,749,675	-	24,480,129	24,480,129	-
차량운반구	8,760,000	8,760,000	-	8,760,000	8,760,000	-
감가상각누계액	(8,760,000)	(8,760,000)	-	(8,760,000)	(8,760,000)	-
비품	56,646,860	56,646,860	-	30,611,440	30,611,440	-
감가상각누계액	(14,897,185)	(14,897,185)	-	(6,131,311)	(6,131,311)	-
(2) 무형자산(주석6)	81,538,001	81,538,001	-	-	-	-
소프트웨어	81,538,001	81,538,001	-	-	-	-
(3) 기타비유동자산	404,358,410	404,358,410	-	475,418,887	475,418,887	-
임차보증금	10,000,000	10,000,000	-	10,000,000	10,000,000	-
위탁사업자산(주석13)	394,358,410	394,358,410	-	465,418,887	465,418,887	-
자 산 총 계	2,322,485,041	2,322,485,041	-	1,953,876,335	1,953,876,335	-
부 채						
I. 유동부채	232,669,617	232,669,617	-	202,640,711	202,640,711	-
미지급금	91,608,445	91,608,445	-	102,159,448	102,159,448	-
예수금	10,776,730	10,776,730	-	11,482,996	11,482,996	-
선수금	130,284,442	130,284,442	-	88,998,267	88,998,267	-
II. 비유동부채	394,358,410	394,358,410	-	465,418,887	465,418,887	-
위탁사업부채(주석13)	394,358,410	394,358,410	-	465,418,887	465,418,887	-
I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	-	-
부 채 총 계	627,028,027	627,028,027	-	668,059,598	668,059,598	-
순 자 산(주석7)						
I. 기본순자산	-	-	-	-	-	-
기본재산	-	-	-	-	-	-
II. 보통순자산	1,695,457,014	1,695,457,014	-	1,285,816,737	1,285,816,737	-
(1) 잉여금	1,695,457,014	1,695,457,014	-	1,285,816,737	1,285,816,737	-
이월잉여금	1,285,816,737	1,285,816,737	-	1,018,853,491	1,018,853,491	-
당기운영이익	409,640,277	409,640,277	-	266,963,246	266,963,246	-
순 자 산 총 계	1,695,457,014	1,695,457,014	-	1,285,816,737	1,285,816,737	-
부 채 및 순 자 산 총 계	2,322,485,041	2,322,485,041	-	1,953,876,335	1,953,876,335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 영 성 과 표

제 24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3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단위 : 원)

과 목	제 24(당) 기			제 23(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I.사업수익	12,521,079,581	12,521,079,581	-	8,429,035,430	8,429,035,430	-
회비수익	13,000,000	13,000,000	-	12,800,000	12,800,000	-
기부금수익(주석8, 12)	10,725,324,132	10,725,324,132	-	6,707,102,261	6,707,102,261	-
보조금수익(주석12)	1,655,612,301	1,655,612,301	-	1,555,655,329	1,555,655,329	-
기타수익	127,143,148	127,143,148	-	153,477,840	153,477,840	-
II.사업비용(주석9)	12,090,416,946	12,090,416,946	-	8,175,568,977	8,175,568,977	-
1. 공익목적사업비용	12,090,416,946	12,090,416,946	-	8,175,568,977	8,175,568,977	-
(1)사업수행비용	11,499,619,531	11,499,619,531	-	7,645,406,230	7,645,406,230	-
(2)일반관리비용	408,172,658	408,172,658	-	387,951,353	387,951,353	-
(3)모금비용	182,624,757	182,624,757	-	142,211,394	142,211,394	-
III.사업이익	430,662,635	430,662,635	-	253,466,453	253,466,453	-
IV.사업외수익	192,540	192,540	-	20,108,487	20,108,487	-
이자수익	954,691	954,691	-	692,434	692,434	-
지원금수익	-	-	-	19,308,629	19,308,629	-
잡이익	(762,151)	(762,151)	-	107,424	107,424	-
V.사업외비용	21,214,898	21,214,898	-	6,611,694	6,611,694	-
반환금	21,214,898	21,214,898	-	6,611,694	6,611,694	-
V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	-	-	-
V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	-	-	-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	409,640,277	409,640,277	-	266,963,246	266,963,246	-
IX. 법인세비용	-	-	-	-	-	-
X. 당기운영이익	409,640,277	409,640,277	-	266,963,246	266,963,246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24(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3(당)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사업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법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실시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1999년 1월 9일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며, 재무상태표 일 현재 기본재산은 0원 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법인은 정관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1 회계단위구분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구분하여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표시하고,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은 '기타사업부문'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두 회계단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통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단위 구분에 따른 내부거래가 이중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통합 결산서에는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

2.2 현금및현금성자산

법인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3 장·단기투자자산

법인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에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들 중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단기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장기투자자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4 재고자산

법인의 재고자산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며,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시가(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경우 순실현가능액, 원재료 및 저장품의 경우 현행대체원가)가 취득원가 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5 유형자산

법인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자본적지

출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2.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및 구입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각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년)
소프트웨어	5

2.7 자산손상

법인은 금융자산 및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제외한 법인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의 경우 미래 경제적효익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

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8 퇴직급여

법인은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당해 회계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법인은 화폐성 외화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기준환율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을 기간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1 기본순자산

법인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어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을 기본순자산으로 분류하며, 이들 자산의 취득금액을 기본순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2 수익인식

법인의 사업수익은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매출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기부금수익

기부금수익은 기부금이 법인 또는 법인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되어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만약 기부자가 기부금을 결제하는 시점과 법인에 입금되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결제 시점에 기부금수익을 인식합니다. 현물로 기부받은 물품은 기부 당시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단, 기부 당시부터 기부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보조금수익

보조금수익은 기부금과 동일하게 현금이나 현물을 실제 지급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지급받은 보조금 중 재무상태표일 현재 반납 예정이거나 미사용 잔액은 보조금수익이 아닌 관련 부채로 계상하고, 미사용 잔액은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보조금수익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조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수익이 아닌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회비수익

회비수익은 회비가 법인의 예금계좌 또는 법인에 직접 입금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나,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는 합리적인 회수가능성이 확보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투자자산수익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미래에 관한 중요한 가정과 측정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

법인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장부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

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 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법인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계정과목	내역	당기	전기
현금및현금성자산	요구불예금	1,273,067,707	959,634,150

* 상기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사용이 제한된 금액은 없습니다.

5. 유형자산

당기와 전기 중 법인의 유형자산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원)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차량운반구	-	-	-	-	-
비품	24,480,129	26,035,420	-	(8,765,874)	41,749,675
합 계	24,480,129	26,035,420	-	(8,765,874)	41,749,675

<전 기>

(단위: 원)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차량운반구	-	-	-	-	-
비품	19,843,235	10,068,540	-	(5,431,646)	24,480,129
합 계	19,843,235	10,068,540	-	(5,431,646)	24,480,129

6. 무형자산

당기 중 법인의 무형자산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원)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소프트웨어	-	82,920,000	-	(1,381,999)	81,538,001

7. 순자산변동

당기 중 법인의 순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목	통합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잉여금		잉여금		잉여금
전기초(2021.1.1)	-	1,145,685,951	-	1,145,685,951	-	-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126,832,460)	-	(126,832,460)	-	-
수정후 순자산	-	1,018,853,491	-	1,018,853,491	-	-
전기운영손익	-	266,963,246	-	266,963,246	-	-
전기말(2021.12.31)	-	1,285,816,737	-	1,285,816,737	-	-
당기초(2022.1.1)	-	1,285,816,737	-	1,285,816,737	-	-
당기운영손익	-	409,640,277	-	409,640,277	-	-
당기말(2022.12.31)	-	1,695,457,014	-	1,695,457,014	-	-

8. 현물기부의 내용

당기중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내역	금액	기부자
기부물품	7,995,652,301	굿피플인터내셔널 외 103개사(명)

9. 사업비용의 성격별 분류

법인의 당기와 전기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원)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10,130,661,086	1,020,132,973	182,673,983	756,948,904	12,090,416,946
사업수행비용	10,130,661,086	580,461,412	120,343,160	668,153,873	11,499,619,531
일반관리비용	-	298,253,496	40,474,466	69,444,696	408,172,658
모금비용	-	141,418,065	21,856,357	19,350,335	182,624,757
합 계	10,130,661,086	1,020,132,973	182,673,983	756,948,904	12,090,416,946

<전 기>

(단위: 원)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6,268,322,761	1,111,964,830	177,081,109	618,200,277	8,175,568,977
사업수행비용	6,268,322,761	727,179,281	108,391,918	541,512,270	7,645,406,230
일반관리비용	-	292,670,922	52,478,128	42,802,303	387,951,353
모금비용	-	92,114,627	16,211,063	33,885,704	142,211,394
합 계	6,268,322,761	1,111,964,830	177,081,109	618,200,277	8,175,568,977

10. 종업원급여

법인은 종업원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당기말 현재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원)

내 용	당 기	전 기
확정기여제도 관련 비용	70,911,386	65,031,627

11.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당기 중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12. 중요거래 내역

당기 중 단일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서울특별시	보조금수익	1,555,910,597	보조금 수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수익	348,010,685	기부금 수령
굿피플인터내셔널	기부물품	937,884,360	현물 기부
주식회사 이지바이오	기부물품	829,997,112	현물 기부
주식회사 와우벤처스	기부물품	602,324,079	현물 기부
(주)지오영	기부물품	556,250,000	현물 기부
롯데제과(주)	기부물품	415,643,186	현물 기부
씨젠의료재단-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부물품	323,347,200	현물 기부
주식회사 제이오팜	기부물품	321,982,372	현물 기부
서울특별시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	기부물품	294,100,000	현물 기부
(주)엔라이즈	기부물품	268,676,198	현물 기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기부물품	256,200,000	현물 기부
애경산업(주)	기부물품	250,761,212	현물 기부

13. 위수탁 사무

(1) 위수탁 협약내용

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를 수탁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위수탁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위탁기관	서울특별시
위수탁 사무	- 광역단위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 자치구 식품등 기부 제공사업자의 식품위생 및 FMS 전산교육 - 자치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운영관리 지원 및 평가 -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기부식품등 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홍보 - 광역단위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 기타 협약에 따른 사무
위수탁 시설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
위수탁 협약기간	2020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2) 수탁시설 결산서

수탁시설인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사회복지법인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며,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의 요약 세입세출결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세 입		세 출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사업수입	1,010,628	사무비	531,136,824
보조금수입	796,816,000	사업비	452,006,361
후원금수입	386,571,012	재산조성비	6,586,720
이월금	277,718,571	예비비및기타	133,979,484
잡수입	6,592,775	차기이월금	344,999,597
합 계	1,468,708,986	합 계	1,468,708,986

14.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아래 1건으로 1심 소송이 진행중이며, 감사보고서 일 현재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재)한민족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봉사활동 금지 및 실적등록 금지에 관한 처분 취소의 소	100,000,000

15. 재무제표의 승인

법인의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1일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외부감사 실시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사업명	- 사회복지협의회사업비 -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지원비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지방보조사업자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감사대상 사업연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단위 : 명, 시간)

감사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 등 전문가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합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회계사		수습 공인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	1	1	2	1	-	-	-	-	-	-	2	2
투입 시간	분·반기검토	-	-	-	-	-	-	-	-	-	-	-
	감사	32	44	80	50	-	-	-	-	-	112	94
	합계	32	44	80	50	-	-	-	-	-	112	94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구 분	내 역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수행시기	2022년 11월 30일			1	일
	주요내용	법인에 대한 이해 및 전반감사계획 수립				
현장감사 주요내용	수행시기		투입인원		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	
			상주		비상주	
	22.11.30. ~ 22.11.30.	1 일	3 명	- 명	내부통제 이해 및 평가	
	23.02.21. / 23.02.24.	2 일	2 명	1 명	계정별 입증감사절차	
		일		명	명	
재고자산실사(입회)	현장조사(참관) 시기	2023년 1월 5일			1	일
	현장조사(참관) 장소	푸드뱅크센터 창고 및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구 분	내 역					
	현장조사(참관) 대상	재고자산(기부물품)				
금융자산실사(입회)	현장조사(참관) 시기	-	-	일		
	현장조사(참관) 장소	-				
	현장조사(참관) 대상	-				
외부조회	금융거래조회	O	채권채무조회	-	변호사조회	-
	기타조회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횟수	2	회			
	수행시기	2022년 11월 30일, 2023년 2월 24일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활용 내용	-				
	수행시기	-	-	일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2년 11월 30일	법인측 2인 감사인 2인	대면회의	감사수행일정 및 예상되는 이슈사항 논의
2	2022년 2월 24일	법인측 2인 감사인 2인	대면회의	감사시 발견한 유의적인 사 항에 대한 논의
3	-	-	-	-
4	-	-	-	-

5.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단위: 원)

자치 단체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수행 기간	예산액	2022년												
					전기 이월분 (A)	증가(B)						감소(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서울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21.2~22.1	31,365,846	31,365,846	-	-	-	-	-	-	-	28,820,209	-	-	2,545,637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사업	사회복지사업 조직적 협의 조정	22.1~22.12	902,560,000	-	-	902,560,000	-	-	374,804	-	-	631,597,591	-	-	-	-
서울시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지원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성화	22.1~22.12	570,668,000	-	-	570,668,000	-	-	1,004,951	-	-	551,401,722	-	-	-	-
서울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22.2~23.1	200,000,000	-	-	200,000,000	-	-	51,538	-	-	144,091,075	-	-	-	-

6. 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내역

(단위: 원)

자치단체	세부사업	연적	소재지	2022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사업			-	16,120,400	-	(1,517,622)	14,602,778
서울시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지원			1,454,368	-	-	(333,674)	1,120,694
서울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3,696,005	-	-	(889,270)	2,806,735

7. 보고자

담당자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2986	직위	대표	성명	최호윤
연락처	02-567-5445					